

박형준 / 2월 / 도약GS / 8회

반구분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실강+실영상반	509117	24	13	24	13	74	1	3.13%	7	32
실강+실영상반	509127	24	13	20	13	70	2	6.25%	6	
실강+실영상반	513503	23	12	17	14	66	3	9.38%	6	
실강+실영상반	513620	25	12	18	10	65	4	12.50%	7	
실강+실영상반	509387	23	11	20	10	64	5	15.63%	6	
실강+실영상반	513456	23	12	19	9	63	6	18.75%	4	
실강+실영상반	513684	22	13	18	10	63	6	18.75%	5	
실강+실영상반	513494	22	11	17	12	62	8	25.00%	6	
실강+실영상반	513843	23	12	16	11	62	8	25.00%	6	
실강+실영상반	509120	23	11	16	9	59	10	31.25%	5	
실강+실영상반	513540	22	12	17	8	59	10	31.25%	5	
실강+실영상반	509377	23	11	16	8	58	12	37.50%	6	
실강+실영상반	508888	20	11	18	8	57	13	40.63%	5	
실강+실영상반	513617	23	14	13	5	55	14	43.75%	6	
실강+실영상반	513808	22	11	15	7	55	14	43.75%	5	
실강+실영상반	513445	22	11	12	9	54	16	50.00%	5	
실강+실영상반	514023	22	11	13	8	54	16	50.00%	6	
실강+실영상반	513448	22	11	18	2	53	18	56.25%	5	
실강+실영상반	513434	24	12	14	3	53	18	56.25%	6	
실강+실영상반	508885	21	8	18	5	52	20	62.50%	6	
실강+실영상반	513476	23	12	10	5	50	21	65.63%	5	
실강+실영상반	513769	18	12	10	7	47	22	68.75%	5	
실강+실영상반	513435	23	11	9	3	46	23	71.88%	5	
실강+실영상반	513802	23	8	15	0	46	23	71.88%	6	
실강+실영상반	513439	22	9	9	5	45	25	78.13%	6	
실강+실영상반	513701	19	11	14	1	45	25	78.13%	5	
실강+실영상반	513615	19	10	8	7	44	27	84.38%	4	
실강+실영상반	513630	20	10	12	2	44	27	84.38%	6	
실강+실영상반	513719	21	12	10	1	44	27	84.38%	5	
실강+실영상반	509171	21	12	9	1	43	30	93.75%	5	
실강+실영상반	513602	23	7	12	1	43	30	93.75%	5	
실강+실영상반	513438	21	11	9	1	42	32	100.00%	5	
실강+실영상반	508482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8900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8915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8961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8992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9058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9107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9122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9123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9146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9152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9153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09767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0838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3436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3440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3481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3526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3607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3748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4005	0	0	0	0	0	33	103.13%	#DIV/0!	
실강+실영상반	514042	0	0	0	0	0	33	103.13%	#DIV/0!	

박형준/2월/도약GS/8회/1번	채점자
	김시연

1. 전반적인 총평

공동소송 관련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해당 논점은 주요 논점이니 꼭 정확하게 정리해주세요.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1

공유인 특허권에 대한 심판 청구 시 청구인/피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였고,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이러한 짧은 문제는 결론을 각각 눈에 띄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설문 1-2

공유자 중 일부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문이었습니다. 학설로 고필공, 유필공이 있다는 점 적어주셔야 하고, 판례의 태도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었던 논점이나 판례는 최대한 외워서 길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검토와 문제의 소재는 너무 긴 것 보다는 적당히 적어주시고 대신 판례, 사안해결을 더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설문 2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제한설/무제한설 대립을 적어주시고 판례의 태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에서 원칙적으로 무제한설을 적어주시고 예외적으로 결정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제한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근소하게 추가 점수 부여하였습니다.

(4) 설문 3

주 선행발명이 변경된 경우 절차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주 선행발명이 설문 상 불분명하였기에 경우의 수를 나눠서 기재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논리가 타당하다면 다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3. 소결

많은 분들이 다 잘 써주셨습니다. 설문당 배점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들 점수 분량에 맞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해당 문제의 논점은 공유/심결취소소송 관련 매우 중요한 논점이므로 혹시 몰랐던 사항이 있으셨다면 꼭 다시 한 번 제대로 정리해서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논점은 다른 사안에 곁들여서 새끼 문제로도 언제든지 출제 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챙겨주세요.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2월/도약GS/8회/2번</p>	<p>채점자</p>
	<p>김시연</p>
<p>1. 전반적인 총평</p> <p>심결취소소송 관련 전반적인 논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소송파트이다보니 배점 분량만큼을 채워주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심결취소소송은 -> 행정소송이므로 ->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흐름으로 기재해주시면 좋습니다.</p> <p>변론주의와 주장책임에 관하여는 다들 잘 기재해주셨습니다. 다만, 결론에서 을이 주장,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기각 판결' 이 예상된다고 결론은 반대로 내려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p> <p>문제는 꼭 꼼꼼히 읽어주시고, 이렇게 기각/인용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특히 더 신경 써서 결론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주세요.</p> <p>(2) 설문 2</p> <p>기속력에 대해 기재해주시면 되고,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대부분 다 잘 써주시기 때문에, 분량과 답 틀림이 채점에 크게 작용합니다. 답을 틀리신 경우, 꼭 확인 한 번 더해주세요.</p> <p>(3) 설문 3</p> <p>일사부재리 관련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탐구영역이므로 나름의 논리를 전개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일정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분량을 채워주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 쓸 말이 너무 없으시면 사안 포섭이라도 구체적으로 길게 적어주시면 그나마 답안 인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p>	

3. 소결

마지막 회차라서 다들 지치셨을 법한데 끝까지 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목차의 가독성이나 판례의 분량적인 면에서 초반보다 많이 나아지시는 것이 보여서 채점자의 입장에서 뿌듯했던 회차였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오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형준/2월/도약GS/8회/3번	채점자
	강경민

1. 문제 3

PbP 청구항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례는 비교적 잘 현출해 주셨지만 사안 포섭에 있어서,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bP 청구항의 경우 물건발명으로 ‘특정’ 을 먼저 하고,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신규성, 진보성, 침해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문 2의 청구항 2, 4를 비교해볼 때, 제조방법이 잉크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를 언급하여 사안 포섭 해주신 답안이 판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공부해주세요.

설문 3의 경우 발명을 제조방법의 기재로 한정하는 예외 경우를 물어보는 사안입니다. “방법 A로 제조되는 잉크는 잉크 X에 있어서 물질 P를 더 포함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구성 상의 특징이 없다.” 는 조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논점을 이탈하거나, 사안 포섭에서 이 조건을 활용하지 않는 답안이 다소 있었습니다.

PbP 청구항 문제의 경우 나올 수 있는 사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주세요.

박형준/2월/도약GS/8회/4번	채점자
	강경민

2. 문제 4

젱슨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의 공지 여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논점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답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PbP, 기능식, 젱슨 청구항의 경우 자칫 알아차리기 힘든 논점들이므로 문제에서 청구항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특이 청구항 문제는 아닌지 한 번씩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인정여부, 사실상 추정 및 복명에 대해 판례와 사안 포섭을 정교하게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문제 - 1]

I. 실문(1)-1)

1. 관련 규정.

(1) 공유 특허권 무효심판 피청구인(법 제 139조 2항)
공유 특허권이기에 대해 심판 청구시, 공유자 모두를 피청
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유권의 심판 청구인(법 제 139조 3항).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
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안

(1) 丙 제기 무효심판의 경우
甲과 乙은 특허권을 공유하는 바, 甲, 乙 모두 피청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甲, 乙 제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甲과 乙은 특허권을 공유하는 바, 甲, 乙 모두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II. 실문(1)-2)

1. 심판취소소송 의미. 취지 (법 제 186조).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심판의 위법성이 관한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

실패와 달리, 실패취소소송의 경우 권리가 공유인 경우
명문으로 권고 목적을 규정하지 않은 바, 요구권수적공
동소송인지 유사판수적 공동소송인지 문제된다.

3. 취소

대법원 취소는 무효실패이나 권리변위확인실패의 실패가
공유 특허권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져 권리의 소멸이 생기
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실패취소소송의 제기는 보존행위로 보아 1인의 청구가 가능
하다 하여 유사판수적 공동소송 일관이다.

4. 취소의 근거

i) 공동소송을 강제할 경우 일부가 청구하지 않다면 불리한
실패가 나오므로 확정되는 부당함이 있고, ii) 실패가 확정된
경우 공동으로 실패절차를 다시 수행하면 되고, iii) 기각된
경우 실패가 확정되는 바 문제되지 않는다.

5. 검토

보존행위의 경우 1인의 단독 소제기를 응징하는 민방위태
도상 취소가 타당하다.

6. 사안

甲 또는 乙이 단독으로 상대방 등의 영이 소제기하는 것
이 허용된다.

II. 서문(2)

1. 심결최소소송의 소용 (배제)

심결최소소송의 소용물은 심결의 위법성 인반으로, 심판의 심리적·전차적 위법 여부다.

2. 무제한

심판 절차에서 심결·판관되리 많은 심결은 위법하게 하는 사유의 주장·입증이 가능한지, 심리범위가 무제한이다.

3. 학설

(1) 무제한설

변론주의나 직권판리주의를 근거로 새로운 사유의 주장·입증은 공격방어방법의 일종으로 가능하다.

(2) 제한설

심결전리주의를 근거로 심판 절차에서 심결·판관되리 많은 사유의 경우 판관이 불가하다.

4. 判例

(1) 원칙

심결최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변론주의의 적용으로 새로운 사유의 주장·입증이 가능하다 하여 무제한설 원칙이나

(2) 예외

당사자 전차권 보장을 위해 일부의 경우 새로운 사유의 주장·입증이 불가하다 하여 예외적으로 제한설 입장이다.

5. 검토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인 바, 원칙무 제한설을 취하리 예외적으로 당사자를 보호하는 취하의례 도가 라당하라.

6. 사안

당사자 권한권 박탈 위험이 있으므로, 무은 주장 입증이가 응하라.

IV. 실무(3)

1. 심결 규정

(1) 거절결정불복심판 준용 규정 (법 제 170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법 제 63조를 준용한다.

(2) ~~의견제출기회 부여~~ (법 제 63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후 의견서를 제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새로운 거절이유 주장 거부 (취하례)

(1) 심사, 심판 단계에서 권한권 보장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 부여와 심판단계에서의 견제출기회 부여는 강행 규정이므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 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여

(2) 소송 단계에서 권한권 보장



이와 마찬가지로 소용 전차에서도 심사·실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개량안을 주장할 수 없다.

(3) 주된 취리가 부합하는 경우.

다만, 심사·실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기 전야우라 주된 취리가 부합하여 보충하는 경우 판단할 수 있다.

3. 주된 취리 부합 판단기준 (판례)

선행 기술 문헌 동일, 전체 사실·구성요소·판단내용이 일치하여 의견서나 보충의 방향이 같아 실권자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4. 우선행발명 변경 (판례)

진보성 판단 시 우선행발명을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인 판단 내용이 바뀌는 바, 주된 취리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5. 사안

(1) 우선행발명 변경 여부 ...적극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서 선행발명 2를 근거로 하는 것은 우선행발명 변경이라.

(2) 주된 취리 부합 여부 ...소극

우선행발명이 변경된바, 주된 취리가 부합하지 아니하며

(3) 새로운 권리유지 여부... 결국

따라서 특허청 소송 수행자가 주장한 것은 새로운 권리유지에 해당하므로

(4) 결론

이에 대해 주권이 불가한 바, 부당하다.

끝.

[문제 -2]

I. 선문 (1)

1. 심결 취소소송 위·취지 (법 제186조)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특히법원에 심결의 위법성 당부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및 적용 법규

심결은 행정처분이며 이는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3. 변론주의 적용 거부 (판례).

i) 반대 견해가 있으나, ii) 판례는 심결취소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판시한 바 있다.

4. 사실의 주장책임 (판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구체적 사실이 대해 주장책임은 진다.

5. 심결의 복원목적 (판례)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보이며 심판과 상충적으로 존재되어 있지 않다.

6. 사안

i) 강의 경우 변론주의 적용으로 선행기록이 이미 기록한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여야 하며, ii) 그외의 아닌 경우 주장책임으로 강의 패소하게 되며, iii) 법원은 인용판결하여야 한다.

II. 실용(2)

1. 취소판결의 기속력 (법 제 189조 3항).

심판·소송 경계를 위해, 인용 후 심판원은 취소의 기결이 된 이유에 기속된다.

2. 기속력 상세 내용 (판례)

(1) 개원적 범위.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관념의 부력범에 있어 발생하며,

(2) 의무

원용 후 심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이유로 동일 심결이 불가하며.

(3)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거의 경우 심판 전과 내지 소송 전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의미한다.

3. 사안.

(1) 선행기회 | 새로운 증거 여부 ... 소극.

원용 전 심판 단계 제출된 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2) 기속력 발생 및 구속 여부 ... 적극.

인용판결이 확정된 바 발생하며, 객관적 선행기회 인용 후 동일심결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3) 결론

실체적 관념이 반하나, 소송경계 상 각각심결이 예외된다.

III. 심판 (3)

1. 일사부재리의의·취리 (법 제 163조)

심판 경계 및 모든 리측 방리를 위해, 본안 심결 확정 후 동일 사실·증거에 의해 누르리 동일심판 경우는 불가하다.

2. 문제권

심결 취소 소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아 심결 취소 후 각각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사실·증거 여부가 불리하다.

3. 판례

(1) 취소된 무효심결 효력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무효심결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확정된 각각심결 내용

무효사유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된 바,

(3) 결론

종전 제출한 무효사유는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가 아니다.

4. 사안

(1) 동일 사실·증거 여부 ... 소극.

선형기술 1은 확정된 심결과 동일 사실·증거가 아니다.

(2) 일사부재리 리측 여부 ... 소극.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리측되지 아니하며~~

(3) 결론

진보성 부정 판결에 따라 인용심결이 예상된다.

가장 중요!
문자 가장 중요!
가장 중요!



[문제-3]

I. 서문(1) (2)

1. PBP 청구항 위시.

제조방법의 한정을 포함하는 물건발명을 의미한다.

2. PBP 청구항 필요성.

- i) 물건발명의 경우 구조 등으로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 ii) 생명공학이나 고분자 발명 등의 경우 구조로서 특성이 여러
위 제조방법으로만 특정 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3. PBP 청구항의 종류

(1) 진정 PBP 청구항.

제조방법의 한정으로만 특정되는 청구항을 의미한다.

(2) 부진정 PBP 청구항.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여 특정할 필요 없이 제조방법의 다른
 장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의미한다.

4. PBP 청구항 허용 여부.

(1) 구형의 태도.

구 특허법은 법 제42조 4항 3호를 두어 PBP 청구
 항을 부여하는 입장이었으나.

(2) 개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삭제하고, 법 제42조 6항을 신설하여
 허용하였다.

5. 특허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판례)

(1) 종래 판례.

제조방법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그 하위 예외한 경우 물건 그 자체로서 해석한다는 입장이었다.

(2) 최근 판례.

1) 범용의 변화

법 제2조 3항에 따라 범용의 범주는 물건범용, 방법범용, 제법범용에 한하여,

2) PBP 청구항의 성질

PBP 청구항의 경우 물건범용이 해당하든 바

3) 물건범용 특정방법.

물건범용의 경우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4) 제조방법의 의미

제조방법의 경우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고

5) 결론.

제조방법이 이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든 없든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갖는 물건으로 파악해야 한다.

6.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판례)

(1) 특허요건과 동일

원칙적으로 침해요건 판단 시의 경우도 특허요건 판단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나.

(2) 예외

이러한 해석에 의한 권리범위가 발명의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등 명백히 부합리한 경우, 예외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7. 검토

물건 자체성, 제법한정성, 발명실체성 ~~중~~ 다양한 견해가 있다
원칙과 예외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를 꾀하는
위생의 태도가 타당하다.

II. 식민(2)

1. 관련 특허요건

(1) 신규성 의미·취지 (법 제29조 1항)

특허는 공계의 대가인 바, 증리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요한다.

(2) 진보성 의미·취지 (법 제29조 2항)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증리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요한다.

2. 청구항별 판단.

(1) 청구항 1의 경우

i) 제법 A가 공지되었는 사실이 없으며, ii) 제법 A를 통해 제조된 잉크의 경우 변권이 현저히 적은 바, iii) 신유·진보성이 인정된다.

(2) 청구항 2의 경우.

i) 제법 A로 한정해서 판단해서는 안되며, ii) 잉크의 경우 변권이 현저히 적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특정한 결과 ii) 잉크 X와 차이로 인해 신유성·진보성이 모두 인정된다.

(3) 청구항 3의 경우.

i) 제법 B의 경우 제법 Y보다 제조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바, ii) 제법 Y와 차이가 있고, 현저한 효과로 인해 신유성·진보성이 인정된다.

(4) 청구항 4의 경우.

i) 제법 B로 만든 잉크의 경우 제조시간 외 물건 자체에 구체적 증거가 잉크 X와 차이가 없는 바, ii) 잉크 X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유성이 부정된다.

3. 甲 출원 등록 적법성

(1) 출원 일체의 원칙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액야유가 있는 경우 출원 권리가 거절된다.

(2) 결론

따라서, 청구항 4의 하자로 등록은 부적법하다.

II. 서문 (3)

1. 특허발명 특성

(1) 발명의 신예 판단

방법 A로 제조되는 잉크는 잉크 X에 있어서 물질 P를 더 포함하는 것 외 변다른 구성상 특징이 없는 바,

(2) 명백히 불합리 여부

잉크 X보다 번진이 현저히 작은 모든 잉크로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바,

(3) 결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방법 A로 한정된다.

2. 실시발명 특성.

A와 전혀 다른 방법 C로 제조된 잉크다.

3. 대비

방법 A와 방법 C의 경우 전혀 다른 방법인 바, 방법 C가 A를 이용하거나 물질 P와 균등한 물질을 추가한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사안.

i) 따라서, K가 J에게 한 경고는 부당하다.

ii) K는 위법한 경고에 따라 J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수도 있다.

공.

[문제-4]

12

I. 진보성 의의·취리 (법 제29조 2항).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해, 공리기술부러움
기 발명이 가능한 경우 등록 불가하다.

II. 선행기술 적격 (법 제29조 1항).

촉원시 공리된 기술의 경우 선행기술 적격을 가진다.

III. 특허발명의 성립.

1. 발명의 성립.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한 결합 발명에 해당한다.

2. 청구항의 성립

전체부와 특징부로 구성된 집수 청구항이다.

IV. 1부 주장 타당성 검토.

1. 문제권.

전체부 기재 사식의 공리기술 여부와 촉진 경과 중 공리자
인이 문제된다.

2. 전체부 사식 공리기술 여부 (추진례)

(1) 공리 추진례

전체부 구성요소나 배경기술의 경우 공리된 것인 분
다는 입장이 있다.

(2) 전합 추진례.

1) 전제

공리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신규성 요건

진보성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책임은 갖고, 이는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2) 결론

청구항이 권태부 기재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권태부 기재 사정만으로 증거기준 본수 없다.

(3) 검토

객관적 진실 반영을 위해 권태부 기재의 태도가 타당하다.

3. 공리 자인 여부

(1) 취사

명세서 기재의 취사 여부를 고려하여 취사인이 어떤 기술이 공리기술이라는 취사로 진술한 경우 사실상 취사함이 타당하며, ~~취사인이~~ 실제 증시되지 않을 것을 착안으로 증시된 것으로 진술한 경우 착오는 입증하여 복면 가능하다.

(2) 검토

제판 상 과백의 범위에 준하는 것과 복면이 반권시를 요구하지 않는 취사의 태도가 타당하다.

(3) 사안

의견서에 기재한 의견은 A, B, C, D의 공리는 사실상 추상이나, 착오를 주장하여 추장을 복면할 수 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계속]



4. 결론

따라서 선행기술 작적이 부인된다는 주장은 라당하라.

V. 2 주장 타당성 검토.

1.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기준 (부정적)

복수의 구성은 분해한 후 개별 구성요소의 공지 여부로 판단
해서는 안되며,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공간성과 효과는 따져
야 한다.

2. 선행기술의 결합에 대한 앞서-동기증이 미시된 사정이 있거나 합격을 기원합니다!

출원시 기술수준 등 제반 사정이 의해 용이하라는 사정이 있는
한 용이하라고 볼수 없다.

3. 결론

특의 공지만으로 진보성 부정 불가하며, 선행기술 1과 2의 결합
용이성도 단보디리 않는다.

VI. 결론

따라서 특 특허발명이 진보성은 인정된다.

<이하 여백>

한당간
관심해답이요 :)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1].

I. 선문(1)-1)

1. 특허가 공유인 경우 심판의 피청구인 자격 - 법 제 129조 2항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게 심판 청구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안

제 3자 A가 제기한 무효심판은 B와 C 모두가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특허가 공유인 경우 심판의 청구인 자격 - 법 제 129조 3항

특허권 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가 공유권 행사를 위하여 심판은 청구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4. 사안

제 3자 A는 상대로 각각 권리행사의 심판은 청구하려고 B와 C 모두가 청구하게 되어야 한다.

II. 선문(1)-2)

1. 문제의 소재. < 심판의 소재

상권취소등 제 1기 제 139조 2항 및 3항 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허가 공유인 경우 원고자격이 문제가 된다.

2. 학설.

특수판수권 공동소송설 과 배외수권 공동소송설 이 있다.

가판판이 심판 청구



3. 위례

(1) 특허 대법원 위례 - 무보수권 권리 범위 확장상관.

특허에 관해서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특허 권리 범주는 제한하는 심판이 있을 경우 2 상권은 취소하기 위해 제기되는 상권 취소 소송은 특허권 소멸 및 권리 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이루어지는 특허권의 보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사판수권 공동 소송의 입장이다.

(2) 특허법원 위례 - 개량권자 보복심판.

개량권자 보복심판에서 특허를 받은 권리가 소멸된 불리한 상권 내려진 경우, 불리한 상권은 취소하기 위해서 해당 권리의 소멸은 방지하기 위한 특허 상권 취소 소송 제기는 받은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유사판수권 공동 소송의 입장이다.

4. 검토

특허를 받은 권리 또는 특허의 보호 범위로 보아 공동소송 강제한수요고 공동소송 강제한 필요성도 없는 바 유사판수권 공동 소송이 타당하다.

5. 사안의 해명

공유자권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상권은 취소하기 위해 제기된 상권 취소 소송은 유사판수권 공동 소송에 해당하여 특허권과 무관한 한명이 제기해도 되므로 유, 2 명 단독으로 제기 가능하다고 본다.



2. 주된 시험반역이 변경된 경우 - 1회

· 심판관이나 심판관보에게서 2회의 심사. 심판관에게서 이미 제1회 거절기유가 기재된 주된 시험반역도 변경하는 경우, 심판관과 출원반역사이 출원반역사이 출원반역사이의 차이로 극복하여 출원반역은 쉽게 반격할 수 인정이 되어 "판관"은 달리 하게 된다. 따라서 주된 시험반역이 변경되면 특정 사안이요는 이미 출원된 거절기유나 주된 취지가 반격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기유에 해당한다.

3. 사안의 해명

(1) 주된 시험반역이 변경된 경우

심사관과 의견제출동시에서 주된 시험반역은 1회만 심사관이 보이면 시험반역 2는 주된 반역인 변경된 것이므로 새로운 거절기유는 제시할 수 주장이 부당하다.

(2) 주된 시험반역이 변경되지 않고 신규

심사관이 주된 시험반역을 2회 이상 의견제출동시에서 보이면 주된 시험반역이 변경되지 않고 기유 3 이미 출원된 거절기유나 주된 취지가 반격하지 심판관보에게서 주장이 타당하다. [끝]

[문제-2]

I. 선출(1).

1. 상권취소소송의 범위

특례는 당사자제. 전사계분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판의 상권취소 위법성은 당사 상권취소소송 항고소송이냐하면
특례인 특례는 상권취소소송은 심판의 항고소송이 아니며
심판과 원판판결이 있다

2. 법 적용

(1) 해지소송법 제 82 조 1항

특례법이 없는 규정은 해지소송법은 준용한다.

(2) 해지소송법 제 82 조 2항

해지소송법이 없는 규정은 민사소송법은 준용한다.

3. 상권취소소송에서의 사실주장

(1) 특례

상권취소소송 변론주지는 인의 하고 있어 추진사사하여 인의
상권취소소송 취지 취소취지하는자가 구체적인 위법사실의
대해 주장은 해야 하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인의
사실이 내에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지 인의에 위배된다.

(2) 권고

상권취소소송은 민사소송법은 그부 준용하는바 변론주지는
인의의 항의 타당하라.

4 차안

2이 심판최소성이기서 아무런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에 입각해 아무런 판단은

한수 없는바 "기각판결" 내리는 것이다

II 심문(2)

1. 최소판결의 기속력

법정안정성 및 심판소양계상

최소성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항소로 상심법원에 귀속되어

기보이 된 이슈에 대해 기속한다.

2 기속력의 범위 - 범위

기속력은 최소의 기보이 된 사항의 사실적 법규판결의

관문대요라는 점이 반사해 되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최소의 기속력 판결과에서의 증거의 범위가 변하여

새판결을 들이 판단의 사항이 있으면 최소 기보이 된

이슈나 동일한 이슈로 관련 심판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증거는 중판최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한 것임을 판

단할 증거에 해당해야 한다.

3. 심판최소성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의 제척론

(1) 항변 범위

항소권 상심법원에 제기되었지만 심판최소성에 제기되지

않았던 증거는 항소심 심판판결에서의 신변과거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신체의 사외당개조이 인물은 이유로 신판차보 큰 고대2
인용하거 추신선과 같은 선은 비는 것 추신선보의
기후대기 반바르기용다 안는다.

(2) 사안

따라서 이 사견차선에서 세현개 같은 줄기에 해당는
신판은 1은 세현개것은 비용지 안는다.

4. 결론

2의 선판은 1제현은 비용되 안므로 2의 추장은
반아드며, 권선 사견과 동인인 결론은 비고수음으로
신판으로 기각선판은 비려가 한다.

III 선은 (3)

1. 인사복제리원대- 권선으로

- ① 선판의 보안성결이 학적대기 ② 누르기 ③ 동인증거.
- ④ 동인사신-이 리에 다시 선판은 처기만수 있다.

2. 인사복제리리만대

(1) 관련 #사회

- ① 추신선판된 목본사견은 아무런 보려기음이시,
당해 상판에서 수장되었던 줄기 사신은 인사복제리원대리
객관적 방식에 해방하기 체하고,
- ② 학적인 기각선판은 "목본사유가 증명가능대기 안판의"는
이유로 추신된 판본이 기록대기 방식에기에 이주인것으로
사견의 이유에도 규와 같은 비용는 기록대기 선은 '반은' 1으로



특인사건, 동인출제나 복수 요구 원사부개기인대기 위배되게
채한다.

(2) 사안

이 부속 상대로 선제기술 1이 기원하여 진본사건이 아닌
이유로 정당한 무효심판은 원사부개기 인대기 위배되리
아니한다

3. 사안의 해명.

자녀의 심판의이 사해결하기 이의제원사부개기 부속인대기
판단하면 이유심견은 인정해야한다. [결]

가장심, 목차 중요!

①

[문제 -3]

1. pbp 청구항 의의

제1항 방법은 한정하는 구성은 포함하는 청구항이다.

2. pbp 청구항의 필요성

문제의 구성은 제1항 방법이 이의제원사부개기인대기만 포함하는 구성

제1항 방법의 구성은 포함하는 청구항의 필요성이다.

3. pbp 청구항의 크기

(1) 진정 pbp 청구항

문제의 구성은 제1항 방법이 이의제원사부개기인대기만 포함하는 구성

있는 경우 진정 pbp 청구항이다 한다.

(2) 부정 pbp 청구항

문제의 구성은 제1항 방법이 이의제원사부개기인대기만 포함하는 구성



있지 않은 경우, 복원성 PBP 청구할 수 있다.

4. 비용면제 - 개량법

본래 항 422 4항 3호의 규정은 삭제하고
항 422 6항 규정은 신설하여 반격의 사유로
포함은 허용되나 PBP 청구하는 경우에도
부정되는 안다.

5. 청구범위 해석 방법

(1) 항 1.

“본질적은 반격으로 보아야한다” 문헌제언,
최저범위에 기재된 제법으로 한정하여 파악해야한다
“제법행위”라 청구 PBP 청구의 범위 반격의 신계가
해 문제이므로 복원성 PBP 청구범위 경우 반격의 신계가
제법에 의해 반격신계에 따라 파악해야한다 “한정신계”라고

(2) 항 2.

특허회관판단시, 원본회관판단의 의의 목적중 하나는 신격에
목적해야한다 안신신야 라고 파악해야같은 예외신 문헌제언

(3) 특허회관판단시 청구범위해석

1) 항 1 항 2

항 1항은 문헌이 제는 제로방법이어서 포함 항 1항
사정면제에 따라 제한 사정 항 1항 항 2항 항 3항
항 2항으로 한정하여 안고 항 2항에 기재된 문헌 항 2항
보아야한다 보았다.

2) 권위항(기취항)

① 제2조 3번에서 변경은 '문헌반영', '제법반영', '방법반영'으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항에서 청구항으로 문헌으로 기재하고 제2항법은 포함하는 청구항의 변경 대상은 청구사항문헌의 변경의 유무에 '문헌반영'에 해당한다.

② 문헌반영의 취지방식 기재는 문헌의 특정 부분만을 인용하여 기재하여, 제2항법의 기재는 문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③ 따라서 기취항의 구성은 제2항법 기재로 한정된 것이거나 제2항법 기재는 광범한 모든 제2항법 기재는 동등 확장된 구성요건은 기취항으로 특정한 것만 포함한다. 이를 제2항법 이외의 문헌으로 특정한 인용이 여부가 따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4) 청구항의 관습적 취지방식 기재 - 취지

청구항의 관습적 기재도 특이사항은 법원 2번으로 판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법원에 의해 확장된 권리방식이 여부에 의해 기재로 확장된 변경의 취지에 상응치 변하는 등의 여부에 불충분한 사항이 있다면 제2항법에 의한 기재의 범위로 제한하여 권리방식은 확장할 수 있다.

II 신원(2)

1. 신규성위반 - ~~제 29조 1항~~

특허공개의 대가인바, 공개가든 또한 가능하다.

2. 신규성위반 신원(2)에의거

(1) 제 1항

방법 A는 잉크 X 보다 변경이 현저히 적은 잉크의 제 1방법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

(2) 제 2항

2항은 PBP 제 2항으로 변경된 방법 A로 제 1항에 비해 향상되는 구조와 성분은 같은 잉크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신규성이 인정된다.

(3) 제 3항

방법 B는 제 1방법 Y보다 제 1항에도 현저히 다양한 제 3방법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

(4) 제 4항

4항도 마찬가지로 PBP 제 2항으로 변경된 방법 B로 제 1항에 향상되는 구조와 성분은 같은 잉크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방법 B로 제 1항에~~ 같은 잉크 X와 변형된 제 1항의 잉크 X에 비해 신규성이 부재된다.

3. 등록의 재법성

(1) 특허청의 위촉

제 2항을 하나라도 기관이 권고적으로,

그 후에도 지체로서 거절된다.

(2) 사안의 해명

공정행위항이 선지시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바
 해당인기에 인격에 의해 甲출원은 특허
 불가하다.

IV 실례 13)

1. 침해대상판단시 치사범위 해석의 차이

침해대상판단시 치사범위는 제1항방법사제로 한정하여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 제1항방법 기재는 포괄한 제1항
 권리의 기재에 의해 파악하고 제1항방법은 권리대상인
 문헌의 구조와 사상은 특정하는 한도로서 이이다.

2. 침해여부

(1) 권리범위 해석

방법 A로 제조되는 잉크로, 이 잉크의 구성은 잉크 X에
 문헌 1은 더 포함하는데에 불가하다.

(2) 침해대상에 관하여

침해대상은 특허받은 제1항방법 C로 제조된 잉크이다.
 다만 이 잉크는 잉크의 범주가 여러 가지라는 특수한 가지로
 있다.

(3) 침해여부

제1항방법 C가 제1항방법 A와 다른 것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해는 부정판수는 옳고 2의 잉크가

방법 A로 해결되는 이코의 번잡이 여러개 개라는 특성은
 가치고 있고 방법 A로 해결되는 이코는 공인 이코의
구성상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저히 다른 번잡이거나
 특성이 반복의 산지로 보여서 그의 이코는 무의
 처항과 항의 권방법이 속한다 보여진다.

3. 권리 타당성.

무의 2은 항한 실패금지라고 타당하다. [출]

[문제-4]

1. 집소 청구항

(1) 이의

전제부나 특징부로 이루어진 청구항은 의미한다.

(2) 사안

무은 사안이 독립적이 대응하면서 청구항 1항은

전제부나 특징부로 나누어진 집소 청구항으로 보았으면

2. 집소 청구항의 전제부 공지성-부식성

(1) 공지 부식성

공지성은 사제부가 기재되거나 공지성이 공지성이

기재된 청구항은 공지된 것으로 본 경우입니다.

(2) 부식 부식성

전제부의 기재는 청구항의 불명확의 흐름은 위하여

변명의 요지, 변제의 적용대상품등을 기재하는 등의

다양한 종래의 명용 가치로 단순히 창작성이
 존재하기 기재된 사항만 가지고 특정된 인식한 수
 있고,
 존재하기 기재된 구체적가 여기서 중대 명용
배경 기재된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명용 및
배경 기재는 출연 배경 기재 이러 한 여기 이 기 기 한
 기재이고 명용 기재 신 심 사 의 유 형 한 중 대 명용 기재 이 는
 하나 이 는 공 시 되 어 있 는 것 은 명 용 이 하 지 만 기 때 만 이
창 작성 이 만 여 기 서 기재 되 어 만 은 가 치 로 공 시 되 는 것 은
없 는 것 이다.

3. 사실상 추진 및 복면 - 배경

(1) 사실상 추진 및 복면 배경 이 기재 된 중 대 명용 이 기재 된 것 은
창 작성 이 기재 된 사 실 상 의 구 체 적 인 배 경 이 기 재 된 것 은
중 대 명용 이 기재 된 것 은 공 시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이다
그 중 대 명용 이 기재 된 것 은 공 시 되 는 것 은 사 실 상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사 실 상 의 구 체 적 인 배 경 이 기재 된 것 은

(2) 복면

다만 이 와 같 은 사 실 상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이 와 같 은
중 대 명용 이 기재 된 것 은 공 시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것 은 공 시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공 시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공 시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공 시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공 시 되 는 것 은 추 진 이 안 되 는 것 은

